

☞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계약기간

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을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또한,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,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.

- 1)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, 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.
- 2)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.
- 3) 계약기간 종료 시 센터의 갱신여부, 수급자(보호자)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- 4) 계약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.
 -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 -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 - 복지용구 급여안내문 사본
 - 신분증(필요시)
- 5)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의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6)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2. 계약목적

지역사회에서 정신적·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, 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,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(보호자)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,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.

3. 계약해지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.

- 1)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(예외도 있음)
- 4) 일시적인 병원 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.
- 5)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되거나 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
- 6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4. 이용수가 및 본인부담금

○ 월한도액

(단위 : 원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2025년도	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

○ 방문요양 수가

시간별	25년	본인부담금
30분	16,940	2,541
60분	24,580	3,687
90분	33,120	4,968
120분	42,160	6,324
150분	49,160	7,374
180분	55,350	8,303
210분	61,670	9,251
240분	68,030	10,205

* 본인 부담금 : 일반(15%), 경감(소득이 따라 9%, 6%). 기초(0%)

3시간 2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 : 166,050원

4시간 20일 이용시 본인부담금 : 204,090원

○ 방문목욕 수가

구분	25년도 수가	25년도 본인부담금
차량이용(차량 내)	86,480	12,972
차량(가정 내)	77,970	11,696
차량 미 이용	48,690	7,304

○ 월한도액 대비 방문일수 비교

유형	방문시간	방문일수				
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방문요양	4시간	33.9일	30.6일			
	3시간			26.8일	24.7일	21.2일